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ergency Arbitrator System of SCC and Requirements
for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안 건 형*
Keon-Hyung Ahn
김 성 룡**
Sung-Ryong Kim

〈목 차〉

- I. 서 론
- II. SCC 중재규칙 제32조 개관
- III. SCC 중재규칙 상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사례
- IV.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과 시사점
- V. 결 론

주제어 : SCC 중재규칙 제32조 및 부록 II, ICDR 국제중재규칙 제37조, SCC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사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

* 대한상사중재원 차장, 경영학박사.

** 대한상사중재원 과장,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 간, 지역 간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장벽 및 관세장벽 등 보호주의적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주변국들 간, 해당 지역 간에 서로 공존하는 모습으로 국제통상 환경이 변해가고 있다.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는 각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계약의 주요 당사자인 개인 및 기업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신속성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에 의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해외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종 중재판정문의 집행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의 인정 여부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소송 제도처럼 중재절차도 중재판정을 받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패소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집행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패소자가 중재절차 진행 중 중재대상 목적물을 처분 또는 이전시킨다면 중재판정은 실효성을 박탈당하고 말 것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적 처분은 1) 법원이 설정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Provisional measure, interim measure, attachment)과, 2) 중재판정부에게 직접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¹⁾ 중재기관마다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는 추세로서 당사자는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 (이하 'ICDR'이라 한다)]이 전세계 중재기관들 가운데 최초로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서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배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규칙에 터 잡아 일방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피조항(opt-out clause) 방식으로 ICDR 국제중재규칙 제37조를 통해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현재까지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안건형·이동수·오원석(2011)²⁾의

1)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82면.

2) 안건형·이동수·오원석,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연구”, 「國際商學」 제26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이하 “안건형·이동수·오원석, ICDR 긴급중재인 제도(2011)”로 인용한다.

연구가 유일한데, 이 논문에서는 ICDR 국제중재규칙 제37조상의 내용 분석과 ICDR의 긴급 임시적 처분의 결정사례들을 통해 긴급 임시적 처분의 절차 진행 과정 및 인정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미국의 법원 판례들을 통해 긴급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임시적 처분 결정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중재인 제도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e of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이하 'SCC'라고 한다)의 중재규칙 제32조 및 부록(Appendix) II 규정의 분석 및 ICDR 국제중재규칙 제37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두 기관에서 운영 중인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SCC의 결정사례들을 통해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인정요건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국제상사중재제도를 활용하는 무역실무가와 법률가들에게 긴급 임시적 처분의 필요성과 임시적 처분 신청이 인정받기 위한 인정요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요건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SCC 중재규칙 제32조 개관

1. 제정연혁

긴급중재인 제도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당사자들이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SCC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는 SCC 중재규칙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면 임시적 처분을 중재기관이 아닌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존재하였다.³⁾ 따라서,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로서는 중재신청 전 또는 중재신청 이후부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⁴⁾

이에 SCC는 자신들의 규칙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당사자들에게 임시적 처분의 가장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그들의 중재합의에서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배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규칙에 의해 일방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자동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피조항(opt-out clause)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규칙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3) John Lundstedt, "SCC Practice: Emergency Arbitrator Decision rendered 2010, p. 1. 이하 "Lundstedt, SCC Practice (2010)"으로 인용한다. <http://www.sccinstitute.com/filearchive/3/39211/Emergency_arbitration_slutlig.pdf> (2011. 7. 6. 20:30 최종 접속).

4) SCC 중재사건의 경우, 중재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중재판정부 구성까지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된다.

2. 적용범위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명령에 대한 개정내용을 포함하는 SCC의 개정된 중재규칙이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접수된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 시점 이후에 접수된 중재사건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 또는 중재조항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된다.⁵⁾

3.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절차

1) 신청 및 비용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을 필요로 하는 일방당사자는 SCC 중재규칙 제1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긴급중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구비요건이 있는데 첫째,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SCC 규칙 제32조, 부록(Appendix) II 제2조 (i)]. 둘째, 분쟁 내용의 요약이 필요하며[SCC 규칙 제32조, 부록 II 제2조 (ii)], 셋째, 왜 긴급 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SCC 규칙 제32조, 부록 II 제2조 (iii)]. 특히, 긴급성(urgency)은 임시적 처분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다. 넷째, 중재합의 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서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SCC 규칙 제32조, 부록 II 제2조 (iv)]. 다섯째,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언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중재인 절차에 따른 비용예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SCC 규칙 제32조, 부록 II 제2조 (v, vi)].⁶⁾ 결국 비용예납도 절차 진행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이다. 비용과 관련하여 SCC 사무국은 인지대(filing fee)를 반드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 그리고 절차상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종 중재판정에서 양당사자들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⁸⁾ 총 신청비용은 긴급중재인 수당⁹⁾과, SCC 사무국의 관리요금¹⁰⁾을 포함한다.

5) 그러나 선정된 긴급중재인과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 또는 중재조항의 존부(存否)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일 경우, 긴급중재인의 결정 효력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심컨대, 결국 본안을 심리할 중재판정부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사료된다.

6) SCC Rules Appendix II Art. 10(1) - 10(2)에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납한다.

7) Lundstedt, SCC Practice (2010), p. 2.

8) SCC Rules Appendix II Art. 10(5).

9) 긴급중재인의 수당은 분쟁의 규모나 복잡성과 관련 없이 EUR 12,000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CC Rules Appendix II Art. 10(2)].

10) 관리요금 또한 EUR 3,000로 확실히 책정되어 있다[CC Rules Appendix II Art. 10(2)]. 참고로 ICDR 긴

2) 긴급중재인 선정 및 기피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사무국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거나 구성된 이후라면 임시적 처분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¹¹⁾ 긴급중재인 선정 시 공정성(impartial)과 독립성(independent)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무국은 분쟁의 성격, 준거법, 중재지, 중재언어 및 당사자의 국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¹²⁾

만일 상대방이 선정된 긴급중재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¹³⁾

3) 절차 진행과 긴급중재인의 결정(Decision)

선임된 긴급중재인은 공정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항상 동등하며(Equal) 합리적으로(reasonable) 공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⁴⁾ 그러나 절차진행에 관한 긴급중재인의 태도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중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사무국은 긴급중재인 또는 일방당사자에 의해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¹⁵⁾ 긴급 임시적 처분의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결정일과 긴급절차의 진행지(seat of the emergency proceedings), 결정이유 및 긴급중재인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요구받는다. 결정문이 완성되면 긴급중재인은 지체 없이 사무국과 각 당사자들에게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¹⁶⁾ 그러나 긴급중재인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면 수정 및 철회를 할 수 있다.¹⁷⁾

4) 절차의 종결

긴급중재인의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됨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한다.¹⁸⁾ 긴급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결정문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사건이 개시되지 못한다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게

급중재인 제도의 경우 관리요금은 별도로 추가 책정하지 않는다.

11) SCC Rules Appendix II Art. 4(1).

12) SCC Rules Art. 13(6).

13) SCC Rules Appendix II Art. 4(3).

14) SCC Rules Art. 19.

15) SCC Rules Appendix II Art 8(1).

16) SCC Rules Appendix II Art 8(1) - 8(2).

17) Lundstedt, SCC Practice (2010), p. 2.

18) SCC Rules Art. 1(2) and Art. 9(4).

된다.¹⁹⁾

4. ICDR 긴급중재인 제도와의 비교

위에서는 SCC의 긴급중재인 제도에 대하여 SCC 중재규칙 제32조 및 부록II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긴급중재인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중재기관은 ICDR이고 두 기관이 운영하는 긴급중재인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SCC와 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를 개괄적으로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ICDR은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에 대한 기피조항 방식으로 ICDR 규칙 제37조를 개정하여 2006. 5. 1.부터 발효하였다. 이에 비해, SCC는 ICDR과 달리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의 임시적 처분은 법원에서만 가능하였지만, 중재규칙 제32조 개정에 따라 2010. 1. 1.부터 SCC도 긴급중재인 제도가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ICDR의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은 두 가지 선결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1)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하여야 하고, 2)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²⁰⁾ 이에 반해, SCC 규칙은 중재신청 전·후와 상관없이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이면 언제라도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ICDR은 신청서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하지만, SCC의 경우는 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SCC가 시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ICDR의 경우 긴급중재인 선정 후 2영업일 이내에 긴급처분 신청을 숙고(consideration)할 일정을 수립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만, SCC의 경우는 긴급중재인 선정 후 특별히 기간을 연장시킬 사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내려진 긴급 임시적 처분의 결정에 대해 취소시킬 수 있는 기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결정일로부터 1) 30일 이내에 중재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2)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의 경우는 SCC가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신청을 중재신청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ICDR의 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다. 2)의 경우에도 ICDR은 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의 기간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SCC가 관리요금 EUR 3,000 및 중재인수당 EUR 12,000, 총 EUR 15,000로 신청비용을

19) Lundstedt, SCC Practice (2010), p. 2.

20) 안건형·이동수·오원석, ICDR 긴급중재인 제도(2011), 137면.

정액으로 확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반면, ICDR은 관리요금 없이 긴급중재인의 중재인 수당만을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는 시간당 요율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SCC와 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의 차이점들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SCC와 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비교표

구 분	SCC	ICDR
발효시점	2010. 1. 1.	2006. 5. 1.
적용방식	기피조항방식	기피조항방식
신청 시 선결조건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 (중재신청 전이라도 가능)	중재신청 후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
긴급중재인 선정	신청 후 24시간 이내	1영업일 이내
절차 진행 계획	없 음	긴급중재인 선정 후 2영업일 이내 긴급처분 신청 일정 수립
결 정	긴급중재인 선임 후 5영업일 이내(연장신청 없을 시)	규정 없음
결정취소	결정 후 1) 30일 이내에 중재신청서가 제출 되지 않거나, 2)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 되지 않은 경우	규정 없음
기피신청	기피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긴급중재인 선정 고지 수령 후 1영업일 이내
관리요금	EUR 3,000	없 음
중재인 수당	EUR 12,000	시간당 요율에 따라 결정
예 납	신청 시 전액 예납	50% 예치금 예납

출처 : SCC 중재규칙 부록 II 및 ICDR 국제규칙 제37조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작성

Ⅲ. SCC 규칙 상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 사례²¹⁾

1.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 기각사례

1) 지분양수도계약 관련 기각사례(이하 '지분양수도 기각사례'라 한다)

신청인 : 해상운송업체(독일)

피신청인 : 해상운송업체(키프로스)

소요기간 : 12일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회사 O를 피신청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함과 동시에 지분 및 부동산 처분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 사례이다.

임시적 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은 1) 피신청인인 X사, 그리고 Y사가 Y사의 지분 및 X사의 계약서 부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양도, 저당, 청구, 매매 또는 처분 금지, 2) 거래담당자 Mr. Z의 Y사 지분 거래 및 명의개서정지(名義改書停止), 3)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국 주정부의 거래 행위 금지명령 등을 청구하였다.

(2) 절차개요

SCC 사무국은 긴급 처분 신청서를 접수 한 후 13시간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임명하였으며 긴급중재인은 1차 절차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답변서 준비를 위한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긴급중재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 간의 추가시간을 허용하였다. 이후 긴급중재인은 피신청인에게 1)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산처분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확인과, 2)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충분한 답변서 제출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SCC 사무국에 4일 간의 추가시간을 더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3) 결정요지

본건 긴급중재인은 임시적 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선, 2) Mr. Z

21) SCC 규칙에 따른 긴급중재인 임시적 처분 결정사례는 “Lundstedt, SCC Practice (2010), pp. 2-10”에 기재되어 있는 4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의 지분 거래 및 명의개서금지, 3) 해당국 정부의 부동산 처분 금지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 구속되는 대상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1) 지분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 저당, 청구, 매매 또는 처분 금지에 대해서는 임시적 처분 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i) “회복 불가능한”(irreparable)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거나, ii) “긴급한”(urgent)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긴급중재인은 현재의 상황이 신청인에게 있어서 피신청인의 지분 및 부동산 처분을 막아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건 긴급중재인은 피신청인이 자산을 처분하려는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닌 상태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이다.

2) 빌딩프로젝트 실시계약 관련 사례(이하 ‘빌딩프로젝트 사례’라 한다)

신 청 인 : 건설업체(이스라엘)

피신청인 : 건설업체(그루지아)

소요기간 : 5일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빌딩프로젝트 실시계약 해제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가 개시된 직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긴급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신청인이 보증은행으로부터 보증된 금액의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였다.

(2) 절차개요

SCC 사무국은 긴급 처분 신청을 접수 한지 18시간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였고, 5영업일 이내에 본건 긴급 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종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다. 피신청인은 2영업일째 SCC 사무국과 긴급중재인이 본건 분쟁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는 불안사항변을 하였고, 4영업일까지 구술심리 없이 상호 간 두 번씩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바 있다.

(3) 결정요지

긴급중재인은 우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SCC규칙을 적용하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긴급중재인의 관할권 문제를 일축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임시적 처분 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긴급중재인은 피신청인이 보증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명령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1)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거나, 2) 긴급

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요건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이다.

3) 대리점계약 관련 사례(이하 '대리점계약 사례'라 한다)

신 청 인 : 대리점 업체(노르웨이)
피신청인 : 제품개발 및 기술보유업체(핀란드)
소요기간 : 6일

(1)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술로 제작된 제품과 그 판매권을 신청인에게 수년간 제공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이 경쟁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본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중재 신청과 동시에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여 1) 신청인에게 계속 당해 제품을 공급하라는 명령, 2) 적정 시장가격 또는 신청인에게 공급했던 가장 최근의 가격으로 납품하라는 명령, 그리고 3) 계약해지 여부와는 별도로 제품 서비스 및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령을 청구하였다.

(2) 절차개요

SCC 사무국은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 후 20시간 내에 긴급중재인을 임명하였고, 5영업일 이내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답변서 준비를 위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SCC 사무국은 긴급중재인의 동의를 얻어 기간연장을 허락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구술심리 없이 준비서면을 각각 제출하였다.

(3) 결정요지

긴급중재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3가지 임시적 처분 신청 중 1) 해당제품 공급 명령, 2) 적정 시장가격 또는 가장 최근에 공급한 가격으로 납품하라는 명령은 임시적 처분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본안에 대한 최종판정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또한 3) 제품 서비스 및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장비 사용 허용 명령은 절차 진행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것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더 이상 결정이 필요치 않은 관계로 역시 기각시킨 사례이다.

2.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 인정사례

1) 지분양수도계약 관련 인정사례(이하 '지분양수도 인정사례'라 한다)

신청인 : 지분참여기업(스위스)

피신청인 : 주식발행기업(스웨덴)

소요기간 : 5일

(1)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식보유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시켜 주는 것을 내용으로 X업체에 대한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X업체가 지분율을 더 늘리기 위하여 제3자에게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보장해 주기로 했던 주식지분율이 더 떨어지게 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재신청 후 일주일 뒤에 신청인은 긴급 임시적 처분도 신청하여 피신청인이 X업체의 주식을 매매, 양도, 이전, 저당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였다.

(2) 절차개요

SCC 사무국은 긴급 신청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임하였고, 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다. 구술심리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 2회씩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3) 결정요지

신청인이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주식지분율을 유지받기 위해 추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최소주식지분율은 절대적인 보장수치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긴급중재인은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이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지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을 인정한 사례이다.

3. 소 결

위에서 살펴본 4가지 SCC 긴급 임시적 처분 결정사례들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각되거나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SCC 규칙 하에서 긴급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4개의 임시적 처분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거나, 긴급(urgent) 또는 위급(imminent)한 상황에 놓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미치

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인정요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4가지 사례에서는 단지 1건의 임시적 처분 신청만이 받아들여진바 있다.

유일하게 임시적 처분 요청이 받아들여진 지분양수도계약 관련 인정사례의 경우 피신청인이 계약상 보장하였던 최소지분 보장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오히려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하려는 행위를 시도하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긴급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와 긴급성을 충족하였던 것이다. 결국 본건 긴급중재인은 신청인의 본질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 처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에는 긴급 임시적 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는데, SCC 중재규칙(제32조 제1항)에서는 임시적 처분이 당해 중재판정부가 적절(appropriate)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내릴 수 있도록 간단히 규정되어 있어, 중재인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SCC의 4가지 긴급 임시적 처분 결정사례들에서는 나타난 인정요건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임시적 처분의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진다. 아래 IV장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IV.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과 시사점

1. 서 설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 중재규칙들은 중재인들이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²²⁾ 경우에 내릴 수 있다는 정도로 간단히 규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UNCITRAL 중재규칙도 이전에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²³⁾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오다가 2010년 개정 규칙에서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²⁴⁾

나아가 대부분의 중재판정사례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재인들은 임시적 처분의

22) KCAB 국제중재규칙 제28조 제1항; ICDR 규칙 제21조 제1항; ICC 규칙 제23조, WIPO 규칙 제46조; LCIA 규칙 제25(1)(a) 참조.

23)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 제26조 제1항.

24) 2010년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26조 제3항.

(a) 임시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의 손해배상액으로는 적절한 배상이 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손해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증가하여야 한다.

(b)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중재인의 후발적인 본안심리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을 판단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3가지 기준, 즉 1) 신청인에게 “심각한”(serious) 또는 “회복 불가능한”(irreparable) 피해가 우려될 것, 2) “긴급성”(urgency) 그리고 3) 일부 전문가들은 본안의 실체에 대한 일응의(prima facie) 승소가능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반면, 이것이 본안의 실체에 대한 예비판단(prejudgment)이 되어서는 안 될 것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²⁵⁾ 아래에서는 이러한 임시적 처분의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

1) “회복 불가능한”(irreparable) 또는 “심각한”(serious) 손해

우선 중재판정부는 종종 임시적 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또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통상 중재판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²⁶⁾ 분쟁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것, 예를 들어, 건설 계약에서 은행보증에 대한 몰취(calling)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몰취의 행위가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인데도 몰취를 시도하는 행위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²⁷⁾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시적 처분은 일방당사자의 행위가 청구된 권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필요하고,²⁸⁾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악영향(prejudice)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²⁹⁾ 이에 반해, 손해가 문자 그대로 “회복 불가능한”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단지 “심각한”(serious) 또는 “상당한”(substantial) 피해임을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³⁰⁾

25) 이는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 제26(3)(b)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G.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II (Wolters Kluwer, 2009), p. 1981. 이하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9)”로 인용한다.

26) Eric Schwartz, *The Practices and Experience of the ICC Court, in ICC, Conservatory and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45, 60(1993). 이하 “Schwartz, *ICC Practices and Experiences* (1993)”로 인용한다.

27) W. Craig, W. Park & J. Paulsson, *Annotated Guide to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37.

28) *Tokios Tokelés v. Ukraine, Procedural Order No. 3, ICSID Case No. ARB/02/18 (18 January 2005), para.8*,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showDoc&docId=DC641_En&caseId=C220> 참조.

29) D. Caron, L. Caplan & M. Pellonpää,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536. 이하 “Caron/Caplan/Pellonpää,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006)”으로 인용한다.

30) 2006년 UNCITRAL 개정 모델중재법 제17A(1)(a).

그런데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문자 그대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 함은 일방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파산한 경우 또는 최종 중재판정의 집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경우로 임시적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³¹⁾

실무적으로는, ICC 중재인들의 경우 종종 금전적 손해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³²⁾ ‘심각한’(grave) 또는 ‘상당한’(substantial) 이라는 용어가 ‘회복 불가능한’이라는 용어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³³⁾ 또한 “회복 불가능한”이란 용어가 문언적 의미로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³⁴⁾ 결국 실제에 있어서는 손해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대부분의 결정들도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신 신청인에게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위협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요컨대, 중재인들이 임시적 처분 신청에 대하여 “회복 불가능한” 또는 “심각한” 인정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어느 정도 신청인이 중재절차 도중에 심각한 피해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지, 2) 어느 정도 그러한 피해가 최종 중재판정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3) 중재절차 도중 손실의 분담 또는 위협을 중재판정부가 일방당사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³⁶⁾

2) “긴급성”(urgency)

둘째로, “회복 불가능한” 또는 “심각한” 피해라는 인정요건 외에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긴급성”을 신청당사자가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긴급성” 요건은 임시적 처분 신청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청구하고 있는 그의 권리에 대한 피해 발생을 조우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가 너무나도 임박하여 그 신청당사자가 판정부의 본안에 대한 최종 판정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³⁷⁾ 또한 “긴급성”은 필요성, 보호를 요하는 권리, 권리를 위협하는 상황 등과 함께 임시적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인정요건 중의 하나이다.³⁸⁾

31) 동지.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9)” pp. 1982-1983.

32) Schwartz, *ICC Practices and Experiences* (1993), p. 60.

33) Caron/Caplan/Pellonpää,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006), p. 537.

34) J. Lew, L. Mistelis & S. Kröll,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ara. 23-65; 물론 “회복 불가능한”이라는 용어가 문언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Plama Consortium Ltd v. Republic of Bulgaria, Order*, ICSID Case No. ARB/03/24 (6 September 2005), para. 46,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showDoc&docId=DC522_En&caseId=C24> 참조.

35)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9), p. 1983.

36) Ibid.

37) Huntley, *The Scope of Article 17: Interim Measur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740 *PLI/Lit* 1181, *75 (2005).

38)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Procedural Order No. 1*, ICSID Case No.

“긴급성” 요건은 “심각한 피해” 요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최종 중재판정 전의 긴급명령처럼, 임시적 처분은 절차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그러한 피해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또는 피할 수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감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³⁹⁾

“긴급성” 요건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또는 기계적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경우에 즉시 내려야 한다는 접근방식 보다는, 그러한 피해가 중재절차의 종결 전에 발생할 것 같다는 현실적이고 상업적인 견지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⁴⁰⁾ 요컨대, 임시적 처분은 양당사자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긴급한 때인 것이다.⁴¹⁾

3) “본안의 일응의 승소가능성”(Prima Facie Case)

마지막으로, 일부 중재인들과 평론가들은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본안의 일응의(*prima facie*) 승소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승소가능성은 물론 임시적 처분의 신청당사자가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⁴²⁾ 임시적 처분의 신청당사자가 본안 청구에 대해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의 신청을 판단함에 있어, 본안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안에 대한 예비판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중재판정부가 본안에 대한 검토 없이 임시적 처분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예비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 할 수 있다.⁴⁴⁾ 따라서 중재인들은 임시적 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본안의 예비판단이 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 간에 엄격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⁴⁵⁾

ARB/05/22 (31 March 2006), para. 75,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showDoc&docId=DC1581_En&caseId=C67>.

39) Caron/Caplan/Pellonpää,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006), p. 548.

40)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9), p. 1987.

41) *Tokios Tokelés v. Ukraine, Procedural Order No. 3, ICSID Case No. ARB/02/18 (18 January 2005)*, para. 8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showDoc&docId=DC641_En&caseId=C220>.

42) 2006년 UNCITRAL 개정 모델중재법 제17(A)(1)(b)조.

43) Markus Wirth, “Interim or Preventive Measures in Suppo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witzerland”, 18 *ASA Bull.* 31, 37-8 (2000); Marc Blessing, “State Arbitrations: Predictability Unpredictable Solutions?”, 22 *J. Int'l Arb.* 2005, p. 435.

44) Ali Yesilirmak, *Interim and Conservatory Meas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11(1) *ICC Ct. Bull.* 2000, p. 31.

45) Christophe Schreuer, *The ICSID Convention: A Commentary 2nd Ed.*, Art. 47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소 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4가지 SCC 긴급 임시적 처분 결정사례들 중에서 ‘지분양수도 기각사례’와 ‘빌딩프로젝트 사례’에서는 긴급중재인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과 ‘긴급성’ 요건을 결정의 인정요건으로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을 신청당사자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바 있다. ‘대리점계약 사례’에서는 ‘회복불가능한 손해’ 요건과 ‘긴급성’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당해 제품의 공급 지속 명령과 적정 시장가격 또는 가장 최근에 공급한 가격으로 납품하라는 명령이 임시적 처분의 판단사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최종 중재판정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이다. 이는 결국 임시적 처분 결정이 본안의 승소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본안의 예비판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에 가까워 보인다. SCC 긴급 임시적 처분 사례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사례인 ‘지분양수도 인정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의 최소주식지분을 보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지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여 준 사례이다. 여기서 당해 긴급중재인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을 문언 그대로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본안의 일응의(*prima facie*) 승소가능성’ 요건을 추정해 보더라도 충분히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위에서 임시적 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긴급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일방당사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집행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SCC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인정요건으로서 최종성(*finality*)을 요구하고 있는바, 문헌적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임시방편적 성격의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이 일시적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집행가능성이 부정될 수도 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다룸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최종적 효력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⁴⁶⁾

V. 결 론

국제상사중재에서 어떤 당사자는 중재신청 전이라도 또는 중재신청 후 중재판정부가 구

2001), para. 2.

46)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건형·이동수·오원석, ICDR 긴급중재인 제도(2011), 144-147면 참조.

성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아닌 중재기관에 긴급하게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SCC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긴급중재인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SCC는 긴급중재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를 차용하여,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 본 제도의 활용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는 추가조항(opt-in clause) 방식이 아닌,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배제하지 않는 한 SCC 중재규칙을 선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피조항(opt-out clause)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긴급중재인 제도의 발효 후 1년 만에 4건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의 III장에서 살펴본 4가지 사례에서는 긴급중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결정까지 평균 7일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⁷⁾ 이는 신속성이라는 중재의 최대 장점 중 하나를 잘 살린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SCC의 긴급 임시적 처분 결정사례 4건 중 인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이는 SCC 긴급중재인들이 임시적 처분에 대한 인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SCC의 사례들뿐 아니라 문헌과 실제 중재판정사례들에서 나타난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여 보았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과 관련하여, 문헌 그대로의 엄격한 기준 적용 보다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이 충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는 상업적 견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로 “긴급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임시적 처분이 어느 일방당사자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긴급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안의 일응의(*prima facie*) 승소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본안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승소할 수 있다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되었다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한 가지를 굳이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임시적 처분의 결정이 본안의 최종 판단에 대한 예비판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중재인들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들에 대해 엄격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국내외의 무역실무가, 법률가 그리고 중재인들에게 긴급 임시적 처분의 필요성과 실무에서 어떠한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들이 있고, 실제로 어떠한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7) ‘지분인수도 기각사례’ 12일, ‘빌딩프로젝트 사례’ 5일, ‘대리점계약 사례’ 6일, ‘지분인수도 인정사례’ 5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ICDR의 평균처리기간 3주일보다 매우 빠른 처리기간을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안건형·이동수·오원석,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연구”, 「國際商學」 제26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 Blessing, M., "State Arbitrations: Predictability Unpredictable Solutions?", 22 *J. Int'l Arb.*, 2005.
- Born, G.,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II (Wolters Kluwer, 2009).
- Caron, D., Caplan, L., & Pellonpää, M.,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Craig, W., Park W., & Paulsson, J., *Annotated Guide to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Huntley, The Scope of Article 17: Interim Measur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740 *PLI/Lit* 1181, (2005).
- Lew, J., Mistelis, L., & Kröll, S.,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Lundstedt, J., "SCC Practice: Emergency Arbitrator Decision rendered 2010", available at <http://www.sccinstitute.com/filearchive/3/39211/Emergency_arbitration_slutlig.pdf>.
- Schreuer, C., *The ICSID Convention: A Commentary, 2nd Ed.*, Art. 4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Schwartz, E., The Practices and Experience of the ICC Court, in ICC, *Conservatory and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45 (1993).
- Wirth, M., "Interim or Preventive Measures in Suppo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witzerland", 18 *ASA Bull.* 31, 37-8 (2000).
- Yesilirmak, A., Interim and Conservatory Meas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11(1) *ICC Ct. Bull.* 2000.

ABSTRACT

A Study on Emergency Arbitrator System of SCC and Requirements for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Keon-Hyung Ahn

Sung-Ryong Kim

The purpose of Emergency Arbitrator System is to provide parties with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interim measures befor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is paper examines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set forth in Article 32 and Appendix II of Arbitration Rules of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in comparison with Article 37 of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is paper also provides a case study of 4 Decisions rendered by Emergency Arbitrators under the auspices of SCC in 2010. It was found that it took only 4 days on average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request for emergency interim measures was registered to SCC to the decision rendered by Emergency Arbitrators. The figures of average days reflect its rapidity well, one of the most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arbitration. However, a case study of SCC decisions shows that only one request for interim measures was successfully granted.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by emergency arbitrator were quite strictly applied.

If interim measures is to be granted, it was found that the requesting party should prov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requesting party has to demonstrate that it may suffer irreparable or serious harm in commercially-sensible, not in a strictly literal sense unless the interim measure is granted.

Second, the party requesting interim measures has to persuade the Emergency Arbitrator that the request was of an urgent nature.

Third, the requesting party is required to meet the reasonable possibility that it may succeed on the merits of the claim.

Key Words : Article 32 and Appendix II of SCC Arbitration Rules, Emergency Arbitrator, SCC Decisions of Emergency Interim Measures, Requirements for Granting of Interim Measures.